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74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0. 3. 24.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2015. 4. 23. 인수(이하 '이 사건 인수'라 한다)하여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고,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자신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으로 주주를 변경(과점주주 100%)하였다. C의 임원이었던 D, E은 2015. 4. 24. 퇴임등기 되었다.

나. 원고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면서 별지1 표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과세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년 12월경 [redacted]구청 지방세 담당자로부터 원고의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제출을 요구받고, C 명의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2장(2014. 12. 30.자 공사대금 3,500,000원, 2015. 3. 31.자 공사대금 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제출한 후 과세대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상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redacted]구청 지방세 담당자는 2018년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후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납부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redacted]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을 하였다.

1) 개정 전후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2018년경 [redacted]구청 지방세 담당자들(이하 '담당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인수한 C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의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이 아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만을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고 원고와 같은 소규모 주택건설업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임입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한계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확인 주장에 관하여

담당자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거나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수령한 것이 중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9

2) 원고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는 C의 사업 실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고 이를 뒷받침할 장부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은 F 주식회사를 통하여 C를 인수하면서 기존 사업실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C의 기존 사업 실적과 관련된 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인수를 중개하였던 F 주식회사가 2015. 3. 31.자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조세법률에 있어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의 전체 취지에 맞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중에서도 과세특례의 필요가 있는 업종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은 소규모 주택건설업을 대도시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9

제1항 제3호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9

별지1

이 사건 처분

	과세대상 부동산	취득일	세목	세액(원)
1	[redacted]구 G 구 건물·토지	2015. 7. 31.	취득세	45,588,000
			지방교육세	6,838,200
			농어촌특별세	0
			가산세 총액	27,912,040
			납부할 세액	80,338,240
2	[redacted]구 G 신축 건물	2016. 3. 4.	취득세	7,894,370
			지방교육세	1,578,870
			농어촌특별세	0
			가산세 총액	4,392,570
			납부할 세액	13,865,810
3	[redacted]구 H 구 건물·토지 1/2 지분	2017. 2. 24.	취득세	27,458,400
			지방교육세	4,118,760
			농어촌특별세	0
			가산세 총액	11,345,870
			납부할 세액	42,923,030
4	[redacted]구 H 구 건물·토지 1/2 지분	2017. 4. 21.	취득세	41,140,850
			지방교육세	6,171,120
			농어촌특별세	0
			가산세 총액	16,247,230
			납부할 세액	63,559,200
5	[redacted]구 H 신축 건물 (I호~J호, 총 9세대)	2017. 12. 12.	취득세	9,035,660
			지방교육세	1,807,130
			농어촌특별세	0
			가산세 총액	2,890,490
			납부할 세액	13,733,280
납부할 세액 합계				214,419,56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9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6.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2.7.10, 2013.1.1, 2013.3.2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9

2013.4.22, 2014.11.19, 2015.6.30, 2015.12.28, 2016.8.11, 2017.7.26, 2017.12.29, 2018.2.9, 2019.12.31, 2020.5.12, 2020.8.11>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12.31>

끝.